

법과대학 운영내규

제 1 조 (목적) 본 내규는 법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교육과정의 운영) ①법과대학에 법학전공과 국제법무학전공을 둔다.

②법학·국제법무학전공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하여는 법과대학 법학·국제법무학전공 교육과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졸업시험과 졸업인증) ①법과대학 졸업예정자의 졸업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졸업시험을 실시한다.

②졸업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③법과대학생의 졸업능력인증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제 4 조 (교수회) ①법과대학의 운영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.

②교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제 5 조 (법과대학발전위원회) ①법과대학의 발전방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교육과정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법과대학 발전위원회를 둔다.

②법과대학발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제 6 조 (교수업적평가위원회) ①법과대학 교수업적의 엄정한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제 7 조 (예결위원회) ①법과대학의 자율예산의 수립·집행 및 결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결위원회를 둔다.

②예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제 8 조 (고시반) ①법과대학 학생의 사법시험 기타 국가시험의 지원을 위하여 고시반을 설치한다.

②고시반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법과대학에 고시반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③고시반과 고시반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제 9 조 (장학사정위원회) ①법과대학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장학사정위원회를 둔다.

②장학금의 지급기준 등 장학금에 관한 사항과 장학사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제 10 조 (학생상벌위원회) ①법과대학 학생의 표창과 징계 기타 상벌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벌위원회를 둔다.

②학생상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제 11 조 (공간활용위원회) ①법과대학 공간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간활용위원회를 둔다.

②공간활용의 기본원칙, 법과대학의 시설물과 각종 기자재의 사용, 공간활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제 12 조 (법학정보 및 전문도서관리위원회) ①법과대학 구성원의 학문성 제고를 위한 정보접근권의 확보와 전문학술도서관의 적정한 구입 및 배분을 위한 법학정보 및 전문도서관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법학정보 및 전문도서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제 13 조 (취업지도소위원회) ①법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지도 및 취업을 제고를 위하여 법과대학 취업지도소위원회를 둔다.

②취업지도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제 14 조 (상조회) ①법과대학 소속 교직원간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고양하고 화기에 넘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조회를 둔다.

②상조회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내규로 정한다.

부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법과대학 교육과정은 '법과대학 법학·국제법무학전공 교육과정 시행세칙'이 제정되기 전이므로 기존의 '법학부 교과과정 운영내규'(2001. 10. 10 제정)에 따른다.